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컬럼비아 특별구

IDEA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

장애학생 학부모의 권리

개정일 2018 년 8 월

소개

컬럼비아 특별구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

장애인 교육법(IDEA) 파트 B에 의거한 특수 교육 절차적 보호조치 요건

개정일 2018년 8월

"장애"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에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됩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공정한 기회, 완전한 참여, 독립적인 생활 및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국가 방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IDEA 서문**

장애학생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서는 학교측이 모든 장애학생의 학부모에게 해당되는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통지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교육기관(State Education Agency, SEA)으로서 주정부 교육국(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은 이러한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측은 학기 마다 한 번씩 본 고지문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최초 위탁 또는 학부모의 심사 요청 시
- 학부모가 학기 중 34 CFR §§300.151~300.153 에 의거한 주정부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34 CFR §300.507 에 의거한 적법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¹
- 자녀를 상대로 교육 배정이 변경되는 징계 조치가 결정된 경우 및
- 학부모의 요청 시

본 문서는 IDEA 파트 B에서(20 USC § 1400 *이하* 참조) 및 컬럼비아 특별구 법(5-E DCMR §3000 *이하* 참조 및 표제 38 D.C. Code 챕터 25~25C)에서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미 교육부 모범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U.S. Department of Education's Model Procedural Safeguards Notice)에 부합하며 본 고지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컬럼비아 특별구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해주시요.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vision of Systems and Supports, K-12
1050 First Street NE, 5th Floor
Washington, DC 20002
(202) 741-0273

본 문서의 전자 버전은 다음 주소에서 이용가능합니다. <http://www.osse.dc.gov>

¹ 학교측은 학부모가 학기 중 최초로 34 CFR §§300.151~300.153 에 의거한 주정부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34 CFR §300.507 에 의거한 적법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학기 내에 후속 주정부 이의 신청 또는 적법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차

| | |
|------------------------------------|-----------|
|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문 개요 | 5 |
| 일반 정보 | 5 |
| 최초 위탁 및 심사 절차 관련 기회 | |
| 사전 서면 통지 | |
| 모국어 | |
| 전자우편 | |
| 학부모 동의 | |
| 독립 교육 평가 | |
| IEP 회의 전/후 문서 제공 | |
| 학부모 참관 | |
| 정보의 기밀성 | 14 |
| 정의 | |
| 학부모 대상 통지문 | |
| 접근권 | |
| 접근 기록 | |
|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기록 | |
| 정보 유형 및 장소 목록 | |
| 비용 | |
| 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 |
| 심리 기회 | |
| 심리 절차 | |
| 심리 결과 | |
| 개인 식별가능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 |
| 보호조치 | |
| 정보 파기 | |
| 이의제기 절차 | 18 |
| 적법절차 심리 이의제기절차 및 주정부 이의제기 절차간의 차이점 | |
| 주정부 이의제기 절차 채택 | |
| 최소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 | |
| 주정부 이의신청 제기 | |
| 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 20 |
| 적법절차 이의신청 제출 | |
| 적법절차 이의신청 | |
| 심리 요청 | |
| 견본 양식 | |
| 중재 | |
| 분쟁해결 절차 | |
|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 26 |
| 공정 적법절차 심리 | |
| 심리 관련 권리 | |
| 심리 결정 | |
| 불복신청 | 28 |
| 결정의 최종성, 불복신청 | |
| 심리 시한 및 편의 | |
| 소송 제기 기간을 포함한 민사 소송관련 사항 | |
|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심리가 계속중일 경우, 해당 학생의 배치 | |

| | |
|--|-----------|
| 장애학생 징계 시 절차..... | 32 |
| 교직원의 권한 | |
| 징계적 이동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 | |
| 환경 판단 | |
| 불복신청 | |
| 불복신청 기간 중 학생 배정 | |
|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 |
| 법 집행 및 사법 기관으로의 위탁 및 조치 | |
| 학부모가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 |
| 경우 관련 요건 | 38 |
| 일반사항 | |
| 추가 정보 | 40 |

개요: 파트 B 절차적 안전조치 고지문

부모로서 귀하는 모든 특수교육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적 보호조치*로 알려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 법 및 규정은 장애학생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을 통해 적합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보호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절차적 안전조치 고지문으로서 장애인 특별법(IDEA)과 컬럼비아 특별구의 특수 교육 관련 법에 따라 귀하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기 절차적 안전조치 전문은 미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표제 34, 파트 300, 컬럼비아 특별구 법전(District of Columbia Code) 표제 38, 챕터 25B 및 25C 및 컬럼비아 특별구 시 규정(District of Columbia Municipal Regulations) 표제 5, 하위 표제 E, 챕터 30(5E DCM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문은 §300.148(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경우), §§300.151~300.153(주정부 이의제기 절차), §300.300(부모의 동의), §300.502(독립 교육 심사), §300.503(사전 서면 통지), §§300.505~300.518(중재,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절차 및 공정 적법절차 심리 등 기타 절차적 보호조치), §§300.530~300.536(파트 B 규정의 서브파트 E 에 의거한 징계 절차 시 절차적 보호조치), 및 §§300.610~300.625(하위파트 F 내 정보 기밀성 규정)에서 이용가능한 절차적 보호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학교, 현지 교육 기관(LEA)으로 불리는 담당 교육구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위치한 주정부 교육 기관(SEA)인 주정부 교육국에 연락해주시시오.

[주: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절차적 보호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LEA 는 귀하에게 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담당 LEA 에 연락하십시오.]

일반 정보

최초 위탁 및 심사 절차 관련 기회

34 CFR §§300.301, 300.304, 및 300.305; D.C. Official Code § 38-2561.02; 5E DCMR §§ 5-3004 및 5-3005.2

심사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IDEA 및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라 사용되는 일련의 절차 및/또는 평가로 구성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1) 학생의 장애 유무 확인 및 장애가 있을 경우 (2) 해당 학생이 필요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속성 및 수준 LEA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A는 구두 위탁이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심사 수행 시, LEA는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기능적, 발달 및 학문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도구 및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LEA는 학생의 장애 여부 판단 및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하나의 측정 또는 평가 결과만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LEA는 신체 또는 발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및 행동적 요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LEA는 인종 또는 문화적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가를 선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가는 학생의 모국어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 심사 시 모국어란(구분이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아닌) 자녀가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평가 개발자의 지침에 맞게 훈련되고 숙련된 직원이 시행해야 하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위해 적절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EA는 자녀의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를 테스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LEA는 해당 학생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감각적, 육체노동 또는 언어 능력상의 장애가 아니라 학생의 적성 또는 성취도 수준 또는 본 테스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기타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평가를 선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LEA는 의심되는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른 LEA로 전학을 갈 예정인 경우, 두 LEA는 필요 시 신속한 평가 완료를 위해 가능한 빨리 협력해야 합니다.
- LEA가 수행하는 심사는 학생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관련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 LEA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판단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와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심사 기한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라, LEA는 위탁 날짜로부터 역일 기준 삼십(30)일 이내에 최초 심사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학부모 동의서가 접수된 후 역일 기준 육십(60)일 이내에 자격성 판단을 포함해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최초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최초 심사 시한은 LE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계속해서 심사를 위해 자녀를 보여주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 학부모가 계속해서 심사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 학부모가 최초 심사 후 자녀를 다른 LEA의 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이전 LEA가 아직 해당 학생이 장애가 있는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특수 환경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새로운 LEA에서 신속한 평가 완료를 위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경우 및
 - 학부모 및 새로운 LEA가 구체적인 심사 완료 시한에 합의한 경우

재심사

재심사는 장애학생이 여전히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최초 심사 후 수행되는 심사로 정의됩니다. 재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상의 요구와 관련된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도 수준 파악
-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 검토 및
- 그러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학부모와 LEA가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3년에 한 번씩 재심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재심사는 사정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학부모 또는 담당 교사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더욱 자주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LEA가 달리 동의하지 않은 한, 재심사를 일 년에 한 번 이상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

34 CFR §300.503, D.C. Official Code § 38-2571.03 및 5E DCMR §3024 및 3025

담당 LEA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전 통지를 제공(구체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자녀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서비스 장소 또는 FAPE 제공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 또는
- 자녀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서비스 장소 또는 FAPE 제공 개시 또는 변경을 거부

사전 통지문의 내용

사전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LEA 가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
- LEA 가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 LEA 가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각 평가 절차, 사정, 기록 및 보고서에 대한 설명
- IDEA 파트 B 의 절차적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학부모가 절차적 보호 규정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 학부모가 IDEA 파트 B 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상기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설명된 절차적 보호 고지문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LEA 가 제안하거나 거부할 조치가 최초 평가 위탁일 경우는 제외. 해당 경우, LEA 는 반드시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IDEA 파트 B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 a. IDEA 에 따라 설립된 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Parent Training and Information Center)
 - b. D.C. 공교육 고충처리 사무소(D.C. Office of the Ombudsman for Public Education) 및
 - c. D.C. 학생 지원사무소(D.C. Office of the Student Advocate)

- LEA 가 고려한 다른 선택안과 이러한 방안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 LEA 가 해당 제안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이유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이해가능한 언어를 통한 통지

통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및
-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 소통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의사 소통 수단이 문자언어가 아닌 경우, LEA 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문이 구두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 수단으로 번역되었는지 여부
- 학부모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 상기 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는지 여부

모국어

34 CFR §300.29

모국어란 영어 구사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의미합니다.

- 해당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및
- 학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을 때(해당 학생의 평가 시를 포함), 해당 학생이 가정 또는 학습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또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해당인이 사용하는 대화수단(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전자우편

34 CFR §300.505

LEA 가 학부모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서 수령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 통지
- 절차적 보호조치 고지문 및
- 적법절차 민원 관련 고지문

학부모 동의

34 CFR §§300.9 및 300.300,5E DCMR §§3026.1 및 3005.2

학부모 정의(34 CFR §300.30 및 5E DCMR §3001.1)

“**학부모**”란 (a)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b) 수양부모(단, 해당 법에 따라 자녀를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의 권한이 소멸되고, 수양부모가 해당 자녀와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부모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IDEA 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적 결정을 내릴 의향이 있으며 해당 학생의 이익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c) 해당 학생의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해당 학생을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가받은 후견인, (d) 해당 학생과 같이 거주하며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예: 조부모, 양부모 또는 기타 친척) 또는 해당 학생의 복지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e) IDEA 및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라 지명된 교육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상기 용어에는 해당 자녀가 컬럼비아 특별구의 피후견인일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란?

동의를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는 본인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수단(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받았습니다.
- 귀하는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해당 동의서는 해당 조치를 기재하고 (해당 시) 공개될 기록과 공개 대상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및
- 본 동의는 귀하 스스로 동의한 것이며 이를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수령하기 시작한 후 동의를 철회(취소)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철회(취소)해야 합니다. 동의 철회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한 후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하기 전 발생한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LEA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한 후 귀하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언급을 제외하기 위해 귀하의 교육 기록을 수정(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소 심사에 대한 학부모 동의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LEA는 귀하의 자녀가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심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서를 학부모에 제공 및
- **사전 서면 통지 및 학부모 동의(Prior Written Notice and Parental Consent)** 섹션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 확보

LEA는 귀하 자녀가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 심사 위해 귀하로부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초 심사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LEA가 귀 자녀에게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LEA는 파트 B 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최초 평가와 관련된 하나의 서비스 또는 활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학부모 또는 그 자녀에게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절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공립 학교에 등록하거나 학부모가 공립 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고자 하며 초기 심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LEA 는 의무는 아니나 컬럼비아 특별구의 IDEA 중재 또는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를 통해 자녀에 대한 최초 심사를 수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LEA 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정부 보호대상을 위한 최초 심사 관련 특별 규칙

IDEA 에서 사용된 주 정부 보호대상이란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주에서 결정한 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탁 자녀
- 주 정부 법에 의거한 주 정부 보호대상 또는
-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대상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본 정의는 IDEA 및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서 규정한 학부모의 정의에 부합하는 위탁 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정부의 보호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학생의 경우, 다음의 경우 학생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심사 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합당한 노력을 다한 후에도 LEA 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부모의 권리가 주 정부 법에 따라 소멸된 경우 또는 또는
- 판사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육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고 해당 개인이 최초 평가에 대해 동의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담당 LEA 는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과 자녀의 배정을 변경하기 전 학부모에게 통지에 입각한 통지를 구해야 합니다.

LEA 는 자녀에게 최초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학부모로부터 통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최초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차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할 경우, 담당 LEA 는 학부모의 동의없이 (담당 IEP 팀에서 권고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적 보호조치(예: 중재, 적법 절차 민원, 분쟁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최초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차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여, LEA 가 귀하의 동의를 요구했던 해당 특수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LEA 는

- 자녀에게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 학부모의 동의를 요청했던 해당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개최하거나 IEP를 수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자녀가 처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언제라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할 경우, LEA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 서면 통지(Prior Written Notice)**에 설명된 대로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담당 LEA는 자녀를 재심사하기 전 귀하로부터 통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단, 담당 LEA에서 다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자녀의 재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다한 경우 **및**
-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EA는 의무는 아니나 중재, 적법 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적차 심의를 통해 해당 자녀의 재평가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동의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담당 LEA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도 IDEA 파트 B에 의거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문서

LEA는 최초 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고, 최초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 자녀를 재평가하고 최초 평가를 위해 주 정부 피후견인의 부모를 찾기 위해 기울였던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는 다음의 의사소통 수단 중 최소 두(2)개 이상을 사용한 세(3)개의 다른 날짜에 최소 삼(3)회 이상의 시도가 포함됩니다.

- 전화 통화 또는 전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학부모에게 발송한 통신문 및 답신 사본 또는
- 학부모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최초 심사에 대한 동의서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은 의뢰 날짜로부터 업무일 기준 십(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타 동의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LEA가 해당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 또는
- 테스트 또는 평가 전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해당 학생에게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가 자비로 사립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거나, 재택교육을 시키며, 자녀의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LEA는 분쟁 해결 절차(예: 중재, 적법 절차 이의제기, 분쟁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이 공정 서비스(부모가 사립학교에 등록시킨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 고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

34 CFR §300.502

정의

독립 교육 서비스(IEE)는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LEA에 고용되지 않은 적격한 조사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기술된 것 처럼, 학부모는 LEA에서 완료한 자녀의 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IEE를 요청할 경우, 해당 LEA는 학부모는 어디서 IEE를 입수할 수 있으며 IEE에 적용되는 LEA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 비용이란 LEA가 심사 비용 전액을 책임지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학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함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은 본 법의 파트 B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주에서 이용가능한 주정부, 현지, 연방 또는 민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DEA 파트 B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모의 권리

해당 LEA에서 시행한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할 경우, 담당 LEA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자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심리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 절차 이의신청 또는 (b) LEA가 심리에서 학부모가 입수한 자녀의 평가자료가 LEA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공 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제공
- LEA가 심리를 요청하고 해당 학생의 LEA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온 경우, 학부모는 여전히 IEE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공공비용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IEE를 요청할 경우, LEA는 LEA가 시행한 자녀의 평가내용에 반대한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LEA는 해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 비용으로 해당 학생에게 제공되는 IEE나 LEA의 평가내용을 옹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 심리 요청을 위해 적법 절차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LEA에서 자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할 때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당 1회의 IEE를 공공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주도 평가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IEE를 확보하거나 LEA와 개인 비용으로 확보한 평가내용을 공유할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LEA는 해당 평가 결과가 LEA의 IEE 기준에 부합할 경우 FAPE 제공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 학부모 또는 LEA는 해당 학생에 대한 적법 절차 심사 시 해당 평가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의 심사 요청

심리 담당관이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IEE를 요청할 경우, 해당 평가는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LEA 의 기준

IEE 가 공적 비용으로 이루어질 경우, 평가 장소 및 시험관의 자격을 포함한 평가 수행 기준은 (상기 기준이 IEE 에 대한 학부모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 LEA 가 평가를 개시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상기에 명시된 기준을 제외하고, LEA 는 공공 비용으로 시행되는 IEE 에 대해 조건이나 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IEP 회의 전/후 문서 제공

D.C. Official Code § 38-2571.03

LEA 는 IEP 팀 회의가 열리기 전/후 학부모에게 특정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IEP 팀이 IEP 또는 특수 교육관련 자격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될 IEP 팀 회의가 열리기 전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LEA 는 회의에서 논의할 평가, 사정, 보고서, 데이터 차트 또는 기타 이용가능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회의 당일까지 남은 기간이 5 일이 안 될 경우, LEA 는 학부모에게 상기 문서를 IEP 회의가 열리기 24 시간 전까지는 제공해야 합니다.

LEA 는 신규 또는 수정된 IEP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IEP 회의 후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학부모에 IEP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IEP 가 근무일 기준 5 번째 날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LEA 가 D.C. 다중 언어 지원법(Language Access Act)(D.C. Code § 2-1931 *이하* 참조)에 따라 학부모를 위해 해당 서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LEA 는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IEP 초안 및 완성본이 있을 경우 최종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LEA 는 IEP 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회의가 개최된 후 근무일 기준 15 일 이내에 최종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 참관

D.C. Official Code § 38-2571.03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LEA 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명한 사람에게 해당 학생의 현재 또는 제안된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접근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의 피지명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관찰 대상인 특수 교육 영역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 학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언어 번역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피지명자는 반드시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소송에서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는
- 소송 결과에 재정적인 이익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부모의 피지명인 중 어느 누구도 관찰 기간 중 확보한 증거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LEA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송에 의뢰인을 개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LEA 는 학부모 또는 피지명인이 현재 프로그램에서의 자녀의 수행능력 또는 제안된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프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LEA 는 학부모 또는 그 피지명인이 현재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또는 해당 학생이 제안된 프로그램에 참석할 경우 발생하게 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LEA 는 학부모의 참관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서면으로 피지명인을 지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EA 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참관에 대한 다른 조건 또는 제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다른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참관인이 다른 학생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 동시에 해당 학급에서 다수의 참관이 이루어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LEA 는 당 기관의 참관 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상기에 설명된 학부모의 참관권은 IDEA 또는 다른 해당 법을 통해 확립된 참관권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기밀성

정의

34 CFR §§300.611 및 300.32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섹션에 기술된 대로

- **파기**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이란 34 CFR Part 99(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정, 20 U.S.C. 1232g(FERPA))에 사용된 “교육 기록” 정의가 적용되는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 **참여 기관**이란 IDEA의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수집, 관리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를 생성하는 교육구,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개인 식별가능 정보**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 a. 학생의 이름, 학부모의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 b. 해당 학생의 주소
 - c. 해당 학생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학생 식별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 d.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해당 학생의 신분 파악이 가능한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학부모 대상 통지문

34 CFR §300.612

SEA 로서 OSSE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인 식별가능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 내 다양한 인구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통지 범위에 대한 설명
- 보관할 개인 식별가능 정보의 당사자, 수집하려는 정보의 유형, 컬럼비아 특별구가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 (정보 출처 포함) 및 정보의 활용처에 대한 설명

- 참여 중개인의 해당 정책 및 과정의 요약본은 다음과 관련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의 보관, 제 3 자에게 정보 공개, 보존, 파쇄 및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법(FERPA)과 34 CFR Part 99의 시행 규정에 의거한 권리를 포함한 상기 정보와 관련된 가족 및 학생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주요 신원, 소재파악 및 평가를 수행하기 앞서(*아동 찾기(Child Find)*로 불림), 컬럼비아 특별구 전역에 걸쳐 학부모에게 이러한 활동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발생부수를 가진 신문 및/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통지문을 게재 및 발표해야 합니다.

접근권

34 CFR §300.613 및 5E DCMR §2600.2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LEA 가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한 자녀에 대한 교육 기록을 학부모가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IEP 관련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심리(분쟁 해결 회의 또는 징계 관련 회의 포함) 전, 불필요한 지연없이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하게 해달라는 학모의 요청에 부응해야 하며, 그 기간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후 사십오(45)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해당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응답받을 권리
-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는 소제목 **비용(Fee)** 아래 설명된 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당 정보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 법적 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참여기관은 학부모에게 후견, 별거 및/또는 이혼과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해당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른 권한이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기록

34 CFR §300.614

각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당사자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학부모 및 참여 기관의 허가받은 직원 제외), 이는 해당 당사자의 이름, 접근권이 부여된 날짜, 기록 사용 허가 목적을 포함합니다.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기록

34 CFR §300.615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와 관련된 기록만 열람하고 검토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유형 및 장소 목록

34 CFR §300.616

요청 시, 각 참여 기관은 해당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한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학부모에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

34 CFR §300.617

수수료로 인하여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각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기록 사본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조회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34 CFR §300.618

학부모가 IDEA 파트 B 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하며,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참여 기관에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이 접수된 후 합당한 기간 안에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이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정보 변경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실에 대해 알리고 **심리 기회(Opportunity For a Hearing)** 섹션에 명시된 대로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 기회

34 CFR §300.619

참여기관은 요청 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절차

34 CFR §300.621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의거한 심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리 결과

34 CFR §300.620

심리 결과로서 참여 기관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며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그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심리의 결과로 정보가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부모에게 당 기관에서 보관하는 자녀의 관련 기록에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 또는 학부모가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진술을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상기 설명은

- 해당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참여 기관에서 보관하는 한, 해당 학생의 기록에 포함해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는
- 참여기관이 어떠한 당사자에게든 해당 학생에 대한 기록 또는 이의제기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상기 내용 또한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34 CFR §300.622

해당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 교육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FERPA)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이 공개가 허용된 경우, 참여 기관의 직원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공개하기 전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IDEA 파트 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기관의 직원이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공개하기 전,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라 학부모 또는 성년기(18 세)에 도달한 수혜 대상 학생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학부모가 거주하는 곳의 LEA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할 예정일 경우,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LEA와 학부모의 거주지역의 LEA의 직원들 간에 해당 학생에 대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공유되기 전, 학부모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호조치

34 CFR §300.623

각 참여 기관은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기관의 직원 한 명이 전담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의 기밀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파트 B와 FERPA에 의거하여 기밀성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의 방침 및 절차에 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기관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직원의 이름과 직함이 기록된 최신 목록을 공람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보 파기

34 CFR §300.624

LEA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IDEA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된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기록, 출석한 수업, 수료한 학년 및 수료년도에 대한 영구 기록은 정해진 시한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적법절차 심리 이의제기절차 및 주정부 이의제기 절차간의 차이점

IDEA 파트 B에는 주정부 이의제기와 적법절차 이의제기 및 심리 시 절차 각각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설명된 대로, 어떠한 개인 또는 기관이라도 LEA, OSSE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과 관련하여 IDEA 파트 B의 요건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요건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주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LEA만 장애학생의 신원확인, 심사 또는 교육 편성 또는 해당 학생에 대한 무료 적합 공공 교육(FAPE) 제공 개시 또는 변경을 위한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SSE 직원은 적절한 시한 연장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역일 기준 육십(60) 일의 기한 내에 주정부 이의신청을 해결해야 하며, 공정 심리 담당관은, 학부모의 요청 또는 LEA의 요청에 따라 심리 담당관이 특별히 시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 절차(Resolution Process)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쟁해결 종료 후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 이내에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부해야 합니다. 주정부 이의신청 및 적법절차 이의제기 해결 및 심리 절차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OSSE는 **모범 양식**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가 적법절차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부모 또는 다른 당사자가 주정부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모범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정부 이의제기 절차 채택

34 CFR §300.151

OSSE는 다음 사항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타 주의 기관 또는 개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을 포함한 모든 이의신청 해결절차
- OSSE에 이의제기 신청 및
- 학부모 및 학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자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을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에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절차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OSSE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제기된 주정부 이의신청 해결 시, OSSE는 해당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조치(예: 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배상)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모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

34 CFR §300.152 및 OSSE 공식 주정부 이의제기 방침 & 절차

시한, 최소 절차

다음의 목적을 위해, OSSE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역일 기준 육십(60) 일의 기한을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OSSE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 현장조사 수행
- 이의신청인에게 해당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LEA 또는 타 공공 기관에 이의신청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 해당 기관의 선택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및** (b) 이의를 제기한 부모와 기간이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LEA 또는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특수교육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 해당 이의신청건의 각 주장을 다루고 (a)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및 결론 **및** (b) OSSE의 최종 결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 서면 결정문을 이의신청인에게 발부

해당 결정문은 이의신청인과 관련 공공 기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시한, 최종 결정, 시행

앞에서 설명된 OSSE 절차는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역일 기준 육십(60) 일의 기한연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 a. 특정 주정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 b. 학부모와 LEA 또는 관련 공공 기관이, 해당 주에서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 또는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연장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
- 필요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OSSE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 a. 기술 지원 활동
 - b. 협상 **및**
 - c. 절차 준수를 위한 시정조치

주정부 이의신청 및 적법절차 심리

적법절차 이의신청 제기(Filing a Due Process Complaint)에 명시된 대로, 적법절차 심리 대상이기도 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주정부 이의신청건에 상기 심리 건과 중복되는 복수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OSSE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절차 심리에서 다루지고 있는 해당 주정부

이의신청 부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정부 이의신청 관련 사안은 앞서 명시된 시한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예: 해당 학부모 및 LEA)가 연관된 적법절차 심리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법절차 심리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며 OSSE는 해당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LEA 또는 공공 기관이 적법절차 심리 결정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OSSE가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적법절차 심리 요청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시행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건은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으나, 합의안 미시행 주장에 대해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적격한 관할지의 법원에서 합의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권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이의신청 제기

34 CFR §300.153 및 OSSE 공식 주정부 이의신청 방침 & 절차

앞서 기술한 절차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은 서명 완료된 주정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이의신청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LEA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 또는 34 CFR Part 300 내 시행 규정 및/또는 특수 교육 관련 컬럼비아 특별구 법의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 해당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및
- 특정 학생과 관련하여 주장된 위반 건일 경우, 이의신청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해당 학생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b.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명
 - c. 집이 없는 학생 또는 청소년의 경우(맥키니 벤토 노숙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ct), 해당 학생의 연락처 정보 및 소속 학교명
 - d. 해당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포함한 해당 학생과 관련된 문제의 속성에 대한 기술 및
 - e. 이의신청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문제해결안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주정부 **이의신청 절차 채택(Adoption of State Complaint Procedures)**에 명시된 대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건이어야 합니다.

주정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OSSE 에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LEA 또는 해당 학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OSSE 는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제출

34 CFR §300.507

학부모 또는 LEA 는 해당 학생의 신원확인, 심사 또는 교육 배정 또는 FAPE 제공 개시 또는 변경 제안 또는 거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념할 점은, 적법절차 심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학부모와 학교/LEA 가 분쟁해결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가 아닌 한, 학부모는 이의신청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서 주장된 사안은 학부모 또는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의심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건이어야 합니다.

상기 시한은 학부모가 다음의 이유로 정해진 시한 내에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LEA 가 해당 이의신청건에서 확인된 사안을 해결되었다는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 LEA 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를 위한 정보

학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학부모 또는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LEA는 학부모에게 해당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적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34 CFR §300.508

심리를 요청하려면, 학부모 또는 LEA(또는 학부모측 변호사 또는 LEA 측 변호사)는 상대측 당사자에게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하기에 명시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당사자는 또한 OSSE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

적법절차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학생의 이름
- 해당 학생의 거주지 주소
-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명
- 집이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해당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소속 학교명
-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포함한 제안 또는 거절된 조치와 관련된 해당 학생 관련 문제의 속성에 대한 설명 및
- 해당 시점에 이의제기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가 알고 있었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안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전 필요한 통지

학부모 또는 LEA는 학부모 또는 LEA(또는 학부모측 변호사 또는 LEA측 변호사)가 상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적법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충족조건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받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상기에 명시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의신청을 수령한 후 역일 기준 십오(15) 일 이내에 심리 담당관 및 상대측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이의신청은 (상기 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령측 당사자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수령한 후 역일 기준 오(5) 일 이내에, 심리 담당관은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상기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부모 및 LEA 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변경

학부모 또는 LEA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변경에 대해 승인하고, **분쟁해결 절차(Resolution Process)**에 기술된 대로 분쟁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절차 이의신청건을 해결할 기회를 가진 경우 또는
- 적법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오(5) 일 전까지, 심리 담당관은 변경사항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해결 회의 시한(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십오(15) 일 이내) 및 분쟁해결 시한(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이 수정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LEA 의 대응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서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 서면 통지(Prior Written Notice)**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LEA는 적법절차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역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답변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 LEA 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고려한 방안과 다른 방안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 LEA 가 제안 또는 거절된 조치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 각 심사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 LEA 가 제안 또는 거절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상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LEA가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상대측 당사자의 대응

본 섹션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LEA 대응(LEA Response to a Due Process Complaint)**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이의신청 접수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역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해당 이의신청서의 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 양식

34 CFR §300.509

OSSE는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와 상대측 당사자의 주정부 이의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견본 양식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OSSE 또는 LEA 중 어느 쪽도 상기 견본 양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는 상기 양식 또는 기타 적합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양식에는 적법절차 이의신청 또는 주정부 이의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재

34 CFR §300.506

적법절차 이의신청 전 발생한 사항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 에 따른 모든 사안과 관련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LEA 가 중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적법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DEA 파트 B 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상기 절차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은

- 학부모 및 LEA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적법절차 심리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 에 따라 허가된 기타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격하고 공정한 중재인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LEA 는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학부모와 학교측에 학부모가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제 3 자와 만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컬럼비아 특별구에 위치한 대안적 분쟁 해결 단체 또는 부모 훈련 및 정보 센터 또는 지역사회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 관계에 있는 제 3 자 및
- 학부모에게 중재 절차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을 권고하는 제 3 자

OSSE 는 적격한 중재인 명단을 보유하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SSE 는 무작위, 순환식 또는 다른 공정한 방식으로 중재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OSSE 가 회의 비용을 포함한 중재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 과정 중 각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학부모 및 LEA 에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및 LEA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양 당사자는 해결방안을 명시한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합니다.

- 중재 과정 중 발생한 모든 논의사항은 기밀로 유지하며 차후의 적법절차 심리 또는 민사소송(법정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 및
- 학부모 및 LEA 를 대신하여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LEA 의 대표가 서명

서명이 완료된 중재 합의서는 적격한 권할지의 주정부 법원(주정부 법에 따라 상기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강제력을 갖습니다.

중재 과정 중 발생한 논의사항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연방 법원 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주정부 법원에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적법절차 심리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

중재인은

- 해당 학생의 교육 또는 관리와 관련된 OSSE 또는 LEA 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 중재인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이익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밖에 중재인으로 적격한 사람이 OSSE로부터 중재인으로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OSSE의 고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해결 절차

34 CFR §300.510 및 5E DCMR §§3030.5, 3030.6, 3030.9, 및 3030.10

분쟁해결 회의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일 기준 십오(15) 일 이내 적법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관련된 LEA 는 학부모 및 해당 적법절차 이의제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IEP 팀 일원과 함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상기 회의는

- LEA 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LEA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LEA 측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LEA 는 IEP 회의에 참석할 관련 팀원들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LEA 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본인의 적법절차 이의신청건과 해당 이의신청건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쟁해결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와 LEA 가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한 경우 또는
- 학부모와 LEA 가 중재(Mediation) 섹션에 명시된 대로 중재 절차를 이용할 것에 동의한 경우

분쟁해결 기간

LEA가 준법준수 이의신청 접수 일로부터 삼십(30) 일 내(분쟁해결 절차 기간 중)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적법절차 이의제기건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절차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최종 적법절차 심리 결정 발부 시한은 역일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의 만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단, 아래에 명시된 대로 역일 기준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학부모와 LEA가 모두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선택한 경우, 학부모가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LEA는 심리 담당관에게 연기를 요청하여 회의가 열릴 때까지 분쟁해결 시한과 적법절차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LEA가 학부모와의 분쟁해결 회의 소집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기에 기술된 대로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요청 시 심리 담당관이 판결하기 전 해당 요청 및 관련 증거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이러한 노력을 문서화한 후, LEA가 분쟁해결 회의에 학부모를 참석시킬 수 없을 경우, LEA는 역일 기준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종료 시 심리 담당관에게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건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A가 시한을 늦추기 위해 연기를 요청할 때처럼,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 기각 요청에는 LEA가 해당 학부모와의 분쟁해결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기에 기술된 대로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는 요청 시 심리 담당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 해당 요청과 관련 증거에 대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문서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된 시간 및 장소를 조율하고자 하는 LEA의 노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화 통화 또는 전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학부모에게 발송한 통신문 및 답신 사본 및
- 학부모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LEA가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건에 대한 통지를 접수한 후 십오(15) 일 내에 분쟁해결 회의를 열거나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심리 담당관에게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적법절차 심리 시한을 시작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조정

학부모와 LEA가 서면으로 분쟁해결 회의를 포기할 경우, 적법절차 심리에 대한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시한이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분쟁해결 회의 시작 후, 역일 기준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종료 전, 학부모와 LEA가 서면으로 합의가 불가하다는 점에 합의할 경우,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적법절차 심리 시한이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LEA가 역일 기준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 종료 시 중재 절차에 동의하였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기에 동의한 경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 절차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LEA가 연기 기간 중 중재 절차를 취소할 경우,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적법절차 심리 시한이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합의서

분쟁해결 회의에서 분쟁이 해결된 경우, 학부모와 LEA 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 학부모와 LEA 를 대신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LEA 대표가 서명한 합의 및
- 적격한 관할지의 주정부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정부 법원) 또는 미국 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합의

합의 검토 기간

학부모와 LEA가 분쟁해결 회의의 결과로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한측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는 학부모와 LEA가 합의를 체결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삼(3) 일 이내에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취소한 당사자는 모든 상대측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공정 적법절차 심리

34 CFR §300.511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마다, 학부모 또는 분쟁과 관련된 LEA 는 공정 적법절차 심리를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OSSE 가 적법절차 심리 소집을 담당합니다.

공정한 심리 담당관

최소한 공정 심리 담당관은

- 해당 학생의 교육 또는 관리에 관여하는 OSSE 또는 LEA 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리 담당관으로서 일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OSSE 또는 LEA 의 고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리에서 심리 담당관의 개관성을 유지하는데 상충되는 개인 또는 직업적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IDEA 의 규정, IDEA 관련 연방 및 IDEA 에 대한 주정부 규정 및 연방 및 주정부 법원의 법적 해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및
- 심리를 수행하고 적절한 표준 법률 업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OSSE 는 심리 담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각 심리 담당관의 자격사항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리 사안

상대측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해당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는 해당 적법절차 심리 건에서 처리 중인 사안 외 다른 사안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리 요청 시한

학부모 또는 LEA는 이의신청건에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이(2)년 이내에 해당 적법절차 이의신청건에 대한 공정 심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시한 관련 예외사항

상기 시한은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LEA 가 분명히 학부모가 이의신청건에서 제기한 문제 또는 사안을 해결하였다고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 LEA 가 IDEA 파트 B 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증거제출 및 설득의 책임(2016년 7월 1일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건)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증거제출과 설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증거제출책임이란 맨 처음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또는 해당 이의제기건에 포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설득책임은 입증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적법절차 사건에서, 입증 기준을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는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당사자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가 증거제출 및 설득의 책임을 진다는 일반 원칙에는 두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그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학생의 현재 IEP 또는 배정 또는 제안된 IEP 또는 배정에 대한 것일 경우,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증거제출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해당 당사자는 학생의 IEP 또는 배정이 부적절하다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LEA는 현재의 IEP 또는 배정의 적절성을 증명해야 하는 설득의 책임이 있습니다.
- 한 당사자가 비공립 학교에 학생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배정이 부적절함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심리담당관은 일방적인 배정과 관련한 심리를 두 개로 나누거나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담당관이 LEA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 배정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 관련 권리

34 CFR §300.512 및 5E DCMR §3029.5

학부모는 적법절차 심리에서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절차 심리의 모든 당사자(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변호사 및/또는 장애학생의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사람을 대동할 권리
- 적법절차 심리에서 변호사의 대변을 받을 권리
-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과 대면하고 반대신문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심리 전 근무일 기준 최소 오(5)일 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아직 공개된 적 없는 증거를 심리에서 개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
- 심리에 대한 서면 또는, 학부모가 선택할 경우, 전자 형식의 축어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및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및 결정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학부모가 선택할 경우, 전자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추가 정보 공개

적법절차 심리 전, 최소 근무일 기준 오(5)일 내에, 학부모 및 LEA는 상대방에게 해당 일자까지 완료된 모든 심사내용과 학부모 또는 LEA가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심사 결과에 근거한 권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심리담당관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심리에서 관련 심가내용 또는 권고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학부모측 변호사는 자신이 있지하고 있는 심리에서 논쟁대상일 수 있는 비공립 제공자의 참여자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심리 시 부모의 권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자녀를 출석시킬 수 있는 권리
- 해당 심리건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및
- 해당 심리 기록, 사실관계 및 결정내용에 대한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심리 결정

34 CFR §300.513

심리 담당관의 결정

해당 자녀가 적합한 무료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FAPE와 직접 관련된 증거와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 위반(예: "불완전한 IEP 팀")을 주장하는 사안일 경우, 심리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 학생이 FAPE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절차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학생의 FAPE 권리가 침해된 경우
- 자녀의 FAPE 제공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 해당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상기에 명시된 규정 중 어떠한 것도 심리 담당관이 LEA에 IDEA 파트 B에 따라 연방 규정의 절차적 안전조치 섹션의 요건(34 CFR §§300.500~300.536)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적법절차 심의 요청

IDEA(34 CFR §§300.500~300.536) 파트 B하에서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섹션 중 어떠한 조항도 학부모가 이미 제기된 적법절차 항소와는 다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절차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문단 및 대중에 대한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 제공

OSSE는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삭제한 후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적법절차 심리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을 주정부 특수 교육 자문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 이러한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을 대중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최종성, 불복신청

34 CFR §300.514

하기에 설명된 대로 심리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경우는 제외하고, 적법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심리 시한 및 편의

34 CFR §300.515 및 5E DCMR §§3030.11 및 3030.12

OSSE 는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에 대한 조정(Adjustments to the Thirty (30) Calendar Day Resolution Period)* 섹션에 설명된 대로, 역일 기준 삼십(30) 일의 분쟁해결 회의 기간이 종료된 후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 이내에 조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 이내에

- 심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 결정문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양 당사자가 전자형식 또는 팩스를 통한 전송에 동의한 경우, 전자형식 또는 팩스를 이용해 이를 전송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리 담당관은 한측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역일 기준 사십오(45) 일의 기간을 초과하는 특별한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심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학부모와 자녀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을 포함한 민사 소송관련 사항

34 CFR §300.516

적법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의 포함)의 조사결과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는 해당 적법절차 심리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 금액과 상관없이 컬럼비아 특별구의 상급 법원(또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주정부 법원)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LEA)는 심리 담당관이 결정을 내린 일자로부터 역일 기준 구십(90) 일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 행정절차의 기록을 접수합니다.
- 학부모 또는 LEA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또한
- 증거 우위의 법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제책을 허가합니다.

적절한 상황에 따라, 사법적 구제책에는 사립학교 수업료 환급 및 보상적 교육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권

미국의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과 상관없이 IDEA 파트 B 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의 규칙

IDEA 파트 B의 어떠한 규정도 미국 헌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73년 장애인재활법 표제 V(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섹션 504) 또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이용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책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단, IDEA 파트 B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구제책을 상기 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당사자가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요구되는 수준까지 상기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는 다른 법에 의거해 IDEA에 따라 이용가능한 구제책과 동일한 구제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예를 들어,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 및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절차)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심리가 계류중일 경우, 해당 학생의 배치

34 CFR §300.518

장애학생 징계 시 절차(Procedures When Disciplin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섹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이의신청서가 상대측 당사자에게 제출되고 나면 분쟁해결 절차 기간 및 공정 적법절차 심사 또는 법정 절차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학부모와 OSSE 또는 LEA 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해당 자녀는 기존의 교육 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최초 공립학교 입학 신청서와 관련된 것일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학생은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IDEA 파트 C에서 IDEA 파트 B로 전환중이며 3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파트 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한 IDEA 파트 B에 의거한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LEA는 학생이 지금까지 이용중인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가 IDEA 파트 B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학부모가 자녀가 최초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수락할 경우, 해당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LEA는 분쟁 대상이 아닌(학부모와 LEA가 서로 동의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OSSE가 수행한 적법절차 심리의 심리 담당관이 학부모와 함께 배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경우, 해당 배정을 현재의 교육 배정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생이 공정 적법절차 심리 또는 법원 절차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증인 비용

34 CFR §300.517 및 5E DCMR §3032.4, D.C. Official Code §38-2571.03(7)(A)

변호사 비용

IDEA 파트 B 하에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학부모가 우세(승소)한 경우, 법원에서는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로서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하에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승소측 LEA 또는 기타 공공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측 변호사가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 법원에서 하찮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 명백하게 하찮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경우 또는
-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나 절차에서, 부모의 적법절차 심의 요청 또는 이후 법정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불필요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심리) 비용 증가 등과 같이 부적절할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한 LEA 또는 타 공공 기관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 비용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의 경우, 학부모가 우세(승소)할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학부모에게 발생한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수준의 전문가 증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의 경우, 학부모측 변호사가 하찮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소송 또는 그에 따른 소송 사유를 제기하거나 해당 소송이 명백하게 하찮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경우, 소송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측인 LEA 또는 OSSE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수준의 전문가 증인 비용을 학부모측 변호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 요청 또는 이후 법정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불필요한 소송 또는 법적 절차(심리) 비용 증가 등과 같이 부적절할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한 LEA 또는 타 공공 기관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증인 비용 지급명령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및/또는 전문가 증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 비용은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비용 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여금이나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소송 또는 절차 별 지급되는 전문가 증인 비용은 \$6,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 증인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IDEA에 따라 심사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독립 교육 심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정보는 [독립 교육 평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 IDEA 파트 B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학부모에게 서면 합의가 제안된 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 a. 합의 제의가 연방 민간 소송 절차 68(Rule 68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규정된 기한 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적법절차 심의 또는 뉴욕 주 재심의 경우, 해당 절차가 시작하기 전 역일 기준 10 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 b. 합의 제의가 역일 기준 10 일 이내에 수영되지 않은 경우, 또한
- c. 법원 또는 행정 심의관이 학부모가 최종적으로 얻은 구제가 합의 제의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기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합의 제안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는 변호사 비용/또는 및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또는 법정 소송에 따른 결과로 소집된 회의가 아닌 한, IEP 팀 회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분쟁해결 절차(Resolution Process)**에 기술된 대로, 분쟁해결 회의는 행정 심의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본 비용 관련 규정의 목적에 따른 행정 심의 또는 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IDEA 파트 B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및 전문가 증인 비용을 삭감하게 됩니다.

- 학부모나 학부모측 변호사가 소송 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중 부당하게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경우
- 지급해야 할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슷한 기술, 평판 및 경험을 지닌 변호사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
- 소송 또는 해당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입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또는
-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절차 이의신청(Due Process Complaint)**에 기술된 대로 LEA 에 적법절차 요청 통지를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OSSE 또는 LEA가 소송이나 관련 절차의 최종적인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에 따른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비용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LEA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과 관련하여 LEA에 제기하는 모든 요청은 심기 결정이 발부된 후 또는 해당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일로부터 사십오(4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LEA의 업무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 학교(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DCPS)는 장애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절차를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DCPS 학교 또는 DCPS 를 LEA 로 선택한 공립 차터 스쿨에 등록된 경우, 학부모에게 IDEA 에서 요구하는 징계 관련 DCPS 절차적 보호조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권한

34 CFR §300.530

사례별 판단

교직원은 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관련 요건에 따라 학교의 학생품행 규정을 위반한 장애학생의 교육 배정을 변경한 것이 적절한 결정이었던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교직원이 동일한 조치를 비장애 학생에게도 적용하는 한, 교직원은 학생 품행 규정을 위반한 장애 학생을 수업일 기준 연속 **십(10) 일**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적절한 임시 대안적 교육 환경, 다른 환경으로 이동조치하거나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또한 동일한 학기에 수업일 기준 연속 **십(1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학생에게 추가적인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는 교육 배치의 변경이 아니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징계적 이동조치로 인한 배치 변경(Change of Placement Because of Disciplinary Removals)**을 참조).

장애학생이 동일한 학기에 총 **십(10) 일의 수업일** 동안 현재 배정된 곳에서 이동조치된 경우, LEA 는 해당 학기 중 다음 이동조치 기간 동안 **서비스(Services)**난에 규정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 행동규약 위반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 (**징후 판단(Manifestation Determination)** 섹션을 참조)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징계적인 배치 변경이 수업일 기준 연속 **십(10) 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경우, 교직원은 비장애학생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가 아래 **서비스(Services)** 섹션에 기술된 대로 해당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학생의 IEP 팀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임시 대안교육 환경을 판단하게 됩니다.

서비스

담당 LEA는 의무는 아니나 해당 학기에 **수업일 기준 십(1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이동조치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담당 LEA에 연락해야 합니다.

수업일 기준 **십(10) 일 이상**의 기간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이동조치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장애 발현 판단(Manifestation Determination)** 참조) 또는 특수 상황 (**특수 상황(Special Circumstances)** 참조)에서 이동조치된 장애학생일 경우, 해당 학생은

- 비록 (임시 대안 교육 환경과 같은) 다른 환경일지라도 일반교육 과정을 지속할 수 있고 학생의 IEP에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서비스(이용가능한 무료 적합 공교육(FAPE))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 적합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조정을 받음으로써 위반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동일 학년에서 동일 학기에 수업일 기준 10일 동안 본인의 현재 배정으로부터 이동조치를 받은 후, 현재의 이동조치가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내이고**, 이동조치가 배정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정의는 아래 참조),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교사 중 최소 1명과 협의를 통해 비록 다른 환경에서라도 일반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시켜 개별교육계획(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동조치가 배정변경은 아닌 경우(" **징계 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Change of Placement Because of Disciplinary Removals)** 참조), 학생의 IEP 팀에서 비록 (임시 대안 교육 환경과 같은) 다른 환경일지라도 일반교육 과정을 계속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IEP에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장애 징후 판단

학생 품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장애 학생의 배정 변경에 대한 결정(연속 **십(1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정 변경이 아닌 이동조치만 받은 경우는 제외)이 내려진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십(10) 일** 이내에, LEA, 학부모 및 (학부모와 LEA가 판단에 따른) 기타 관련 IEP 팀원은 해당 학생의 파일에서 학생의 IEP, 교사의 관찰소견 및 학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또는**
- 문제의 행위가 LEA가 학생의 IEP를 시행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LEA, 학부모 및 기타 관련된 IEP 팀원이 상기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의 행동은 해당학생의 장애가 발현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EA, 학부모 및 기타 관련 IEP 팀원이 문제의 행동이 LEA가 IEP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LEA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위가 장애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LEA, 학부모 및 기타 관련 IEP 팀원이 해당 행위가 학생의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IEP 팀은

- LEA가 배치 변경을 초래한 문제의 행동이 발생하기 전 이미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학생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을 시행합니다. **또는**
- 행동 중재 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문제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중재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합니다.

아래에 **특수 상황(Special Circumstances)**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LEA가 행동중재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배정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 한, LEA는 이전조치 전의 배정 상태로 학생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수 상황

문제 행위가 학생의 장애 발현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 은 다음의 경우 수업일 기준 사십오(45)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해당 학생을 이동조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 학교에 무기(하기의 정의를 참조)를 반입하거나 수업중, 주정부 교육기관 또는 LEA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한 경우
- 수업 중, 주정부 교육기관 또는 LEA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하기의 정의를 참조)을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규제 물질(하기의 정의를 참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한 경우 **또는**
- 수업 중, 주정부 교육기관 또는 LEA의 관할하에 있는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하기의 정의를 참조) 입힌 경우

정의

규제 물질이란 규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21 U.S.C. 812(c) 202(c)항의 별첨 I, II, III, IV 또는 V에 명시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이란 규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되거나 또는 동 법률하의 다른 권한 및 연방법률의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소지되거나 사용되는 규제 물질은 제외됩니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란 미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표제 18 1365항 (h)호 (3)목에 제시된 용어인 "심각한 신체적 위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기란 미연방 법전 표제 18, 930항 (g)호 (2)목에 제시된 "위험한 무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통지

학생품행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배정이 변경되는 이동 조치 결정이 내려진 날, LEA는 학부모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하고 절차적 보호 고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징계적 이동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

34 CFR §300.536

다음의 경우, 장애학생의 이동조치로서 현재의 배정이 **변경됩니다**.

- 이동조치가 수업일기준 십(10) 일 이상일 경우 **또는**
-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유형의 이동조치를 여러차례 받았을 경우:
 - a. 연속된 이동조치 기간이 학기 내 십(10) 일 이상인 경우
 - b. 학생의 행동이 연속된 이동조치 처분을 초래한 이전 사건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 c. 각 이동조치 기간, 해당 학생이 이동조치를 받은 총 시간 및 이동조치 발생 간격

배치 변경으로 간주되는 이동조치의 유형은 LEA가 각 사례에 따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적법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 판단

34 CFR §300.531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는 **배정 변경**을 초래하는 이동조치와 **추가 권한(Additional Authority)** 및 **특수 상황(Special Circumstances)** 섹션에 따른 이동조를 위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불복신청

34 CFR §300.532

일반사항

학부모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이의신청(**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Due Process Complaint Procedures)**)를 참조)을 통해 적법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배치 관련 결정 또는
- 앞서 기술된 장애 발현 판단

LEA 에서 해당 학생이 현재 배정을 유지할 시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상기 내용 참조)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의 권한

공정 적법절차 심리(Impartial Due Process Hearings) 섹션에 기술된 요건에 부합하는 심리 담당관은 적법절차 심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 이동조치가 **교직원의 권한(Authority of School Personnel)**에 기술된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장애학생을 원래의 배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 심리 담당관이 해당 학생이 현재 배정상태를 유지할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수업일 기준 사십오(45) 일 이내에 장애학생의 배정상태를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LEA에서 학생을 원래의 배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상기 심리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LEA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Due Process Complaint Procedures) 및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Hearings on Due Process Complaints)** 섹션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정부 교육기관 또는 LEA 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이십(20)** 일 내에 긴급 적법절차 심리를 주선해야 하며 심의 개최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십(10)** 일 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 학부모와 LEA 가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법절차 이의제기에 대한 통지가 접수된 날로부터 역일 기준 **칠(7)** 일 이내에 분쟁해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 역일 기준 **십오(15)** 일 이내에 해당 사안이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정부는 긴급 적법절차 심리에 대해 다른 적법절차 심리와는 다른 절차적 규칙을 수립할 수 있으나, 시한을 제외하고, 상기 규칙은 적법절차 심리와 관련하여 본 문서에 제시된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LEA는 다른 적법절차 심리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속 적법절차 심리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불복신청(Appeal)** 참조)

불복신청 기간 중 학생 배정

34 CFR §300.533

앞서 설명한 대로, 학부모 또는 LEA 가 징계 사안과 관련된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해당 학생은 (학부모와 주정부 교육기관 또는 LEA 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심리 담당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교직원의 권한(Authority of School Personnel)**에서 설명한 대로 이동조치 기간이 말로 시 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안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34 CFR §300.534

일반사항

현재까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자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학생품행규정을 위반했으나 LEA에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동이 일어나기 전 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하기의 판단에 따라), 학부모는 통지문에 기술된 보호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안에 대한 기본 지식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LEA에서 학생이 장애학생인 지의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생의 부모가 해당 교육기관의 감독관이나 행정직원 또는 담당교사에게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우려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 부모가 IDEA 파트 B하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경우 또는
- 교사나 기타 LEA 직원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에 대해 LEA의 특수교육 관리자 또는 LEA의 기타 관리직원에게 직접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한 경우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 LEA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 해당 학생이 심사를 받았으나 IDEA 파트 B하의 장애학생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 **징계 사안에 대한 기본 지식(Basis of Knowledge for Disciplinary Matters)** 및 **예외사항(Exception)**에 기재된 대로, LEA가 해당 학생의 장애학생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유사한 행위 시 비장애 학생이 받게 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동안 학생에 대한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적 배정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 없는 제적 또는 제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행된 심사 결과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LEA는 하기에 기술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 및 사법 기관으로의 아위탁 및 조치

34 CFR §300.535

IDEA 파트 B 는

- 한 기관이 장애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는
- 주정부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이 장애학생의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본연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기록 전달

장애학생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LEA 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해당 범죄를 신고할 당국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법(FERPA)에서 허용하는 정도에서만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독단적으로 결정으로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요건

일반사항

34 CFR §300.148 및 5E DCMR §3018.5

LEA 에서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학부모가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자녀를 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IDEA 파트 B 에 따라 LEA 는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속한 장애학생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역적으로 유일한 LEA 로서) DCPS 는 34 CFR §§300.131~300.144 에 따라 부모의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관련된 파트 B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인구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립학교 비용 환급

자녀가 이전에 LEA 의 권한에 따라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나 학부모가 해당 LEA 의 동의나 추천 없이 자녀를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이나 심리 담당관이 등록 전 해당 기관이 자녀에게 시의 적절하게 FAPE 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립시설 입학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나 심리담당관은 해당 기관이 학부모에게 등록비용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 또는 법원은 OSSE 및 LEA 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입학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제한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환급금이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공립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부모가 가장 최근에 참석한 IEP 회의에서, 본인의 우려사항에 대한 진술과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의사 등을 비롯하여 LEA 가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정을 거부할 것임을 IEP 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전 근무일 기준 최소 십(10) 일 전(근무일에 있는 휴일 포함), 학부모가 해당 정보를 LEA 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자녀의 공립학교 자퇴에 앞서, LEA 에서 자녀를 심사하고자(적절하고 합당한 심사 목적에 대한 진술 포함)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학부모가 거부한 경우 또는 학부모가 자녀가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또는
- 법원에서 학부모의 행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나 환급 비용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 또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 a. 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경우
 - b. LEA 또는 학교측에서 학부모가 통지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
 - c. 학부모가 앞서 설명된 통지 의무에 대해 통지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 d. 상기 요건을 준수할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심각한 정신적인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연락해주시오.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1050 First Street, NE, 5th Floor
Washington, DC 20002
(202) 478-5947

본 문서의 전자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sse.dc.gov>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컬럼비아 특별구
IDEA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장애학생 학부모의 권리

수령확인증

본인, _____ 은(는)
(부모/후견인 이름)

컬럼비아 특별구 IDEA 파트 B 절차적 보호조치 통지: 장애학생 학부모의 권리 사본을
_____ 을(를) 통해
(문서 발행인 이름 및 직함)

_____ 에서 수령하였습니다.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
(일자)

(부모/후견인 서명)

(본 수령확인증은 학부모/후견인의 요청 시 제공된 사본과 함께 학교 내 지정된 파일 내에 보관될
것입니다.)